

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의안번호 제2959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6. 27.

김원순 의원 등 6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25. 7. 4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5. 7. 16.

의회운영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김원순 의원)

가. 개정이유

- 고성군의회 사무전결대상 사무 중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,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대상 사무 중 인사관리 항목 추가 (안 별표)

다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10조(문서의 결재)
- 「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」 제5조(전결대상 사무)

○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○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-31호

- 예고기간: 2025. 6. 27.(금) ~ 7. 3. [6일간]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조래훈)

- 본 개정규칙안은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상 전결 대상 사무에 ‘인사관리’ 항목을 신설하여, 의회사무과 내 인사 관련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, 업무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,
- 현행 규칙은 인사관리 사무가 전결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 집행과 책임 소재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전결사항의 체계화와 명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- 적정성 및 타당성
 -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(2022년 1월 시행) 이후, 의회사무과의 인사 관리에 관한 사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할 필요성이 높아졌음.
 - 인사사무의 전결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사무처리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,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능해짐.
- 종합검토 의견
 - 본 개정규칙안은 인사관리 사무의 전결 권한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,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의회사무 처리의 체계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
 -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확대된 인사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규율해 실무 혼선을 방지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며,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와의 저촉이나 규칙 개정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7. 16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